

의안 번호	제2호
의 결 년 월 일	2011. 7. 28.(목) (제 1 회)

의
결
사
항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출자	국무총리실장 임채민
제출 년 월 일	2011. 7. 28.(목)

1. 의결주문

-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지식재산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1) 수립 개요

- (기본계획 성격) 지식재산 정책의 비전·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최상위·최초의 중장기 발전전략
- 「지식재산 기본법」(제8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
- 정부·민간 합동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민간위원)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전략
- (추진경과) 국가경쟁력강화회의(대통령주재, '09.7.29)에서 범정부적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 마련
-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과제의 실효적인 추진을 위해 총리실에 지식재산정책협의회(의장: 국무총리실장) 설치('09.10.27)
- 민·관 합동 「기본계획TF」(팀장: 국정운영2실장), 전문가작업반(100여명) 및 전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기본계획 5차 초안 마련('11.3월)

(2)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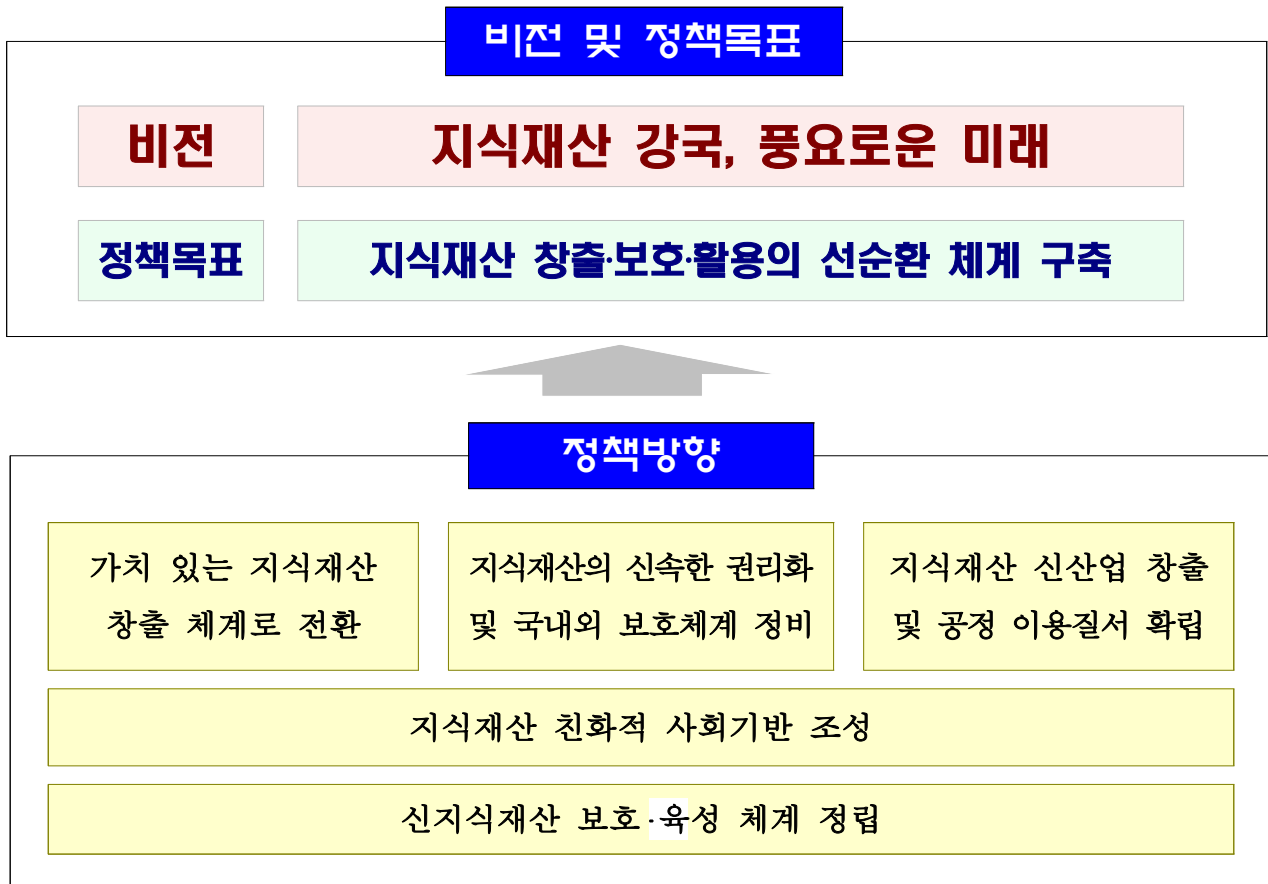
가. 주요 국가의 지식재산 정책 동향

- (미국) '08.10월 지식재산 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예산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조직의 우선화 법」 제정
 - * 대통령실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장관급)을 신설, 정책조정 기능 강화
- '10.6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인 “지식재산집행 공동전략” 수립
- (일본) '02년 「지적재산기본법」 제정,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총리) 설치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제를 구축
 - '03년 이후 매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도·정책을 강화
 - * 초기에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다, 점차 콘텐츠·국제 표준 획득 등 전략 분야를 선택하여 역량을 집중

나. 지식재산 현황과 과제

- (창출분야)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등에 따라 지식재산의 양적 규모는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으나, 질적 생산성은 아직 미흡
 - * '07년 특허출원 4위, 과학기술 논문수 12위, 기술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지속 확대
- (보호분야) 지재권 보호 순위는 세계 32위(IMD, '10년)로 여전히 미흡하고,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침해가 확산되는 추세
 - * 위조품 유통에 따른 국내기업의 수출 피해액 : 약 17조원('06년)
- (활용분야) 대학·공공연구 보유 기술의 이전·사업화 등을 통한 산업적 활용은 개선 추세이나, 선진국 등과 비교해서는 큰 격차
 - * 대학·공공연구의 기술료수입('09년)은 0.87억 달러, 미국 대학·연구소(33.9억 달러)의 26%
- (인프라분야) 지식의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증대되고 있으나, 타인의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 인식이 저조

(3) 지식재산 비전 및 목표



(4) 단계별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가. 단계별 추진전략

- 1단계(2012~2014년) : 지식재산전략 추진 기반 구축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각 분야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법령·제도 정비
- 2단계(2015~2016년) : 지식재산을 통한 부(富) 창출 메커니즘 구축
 - 「창출 → 보호 → 활용 → 고부가가치 창출 →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선순환 체계 완성 및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조성

나. 정책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① 가치 있는 지식재산 창출 체계로 전환

- 연구개발 전(全)주기적·단계별 지식재산 창출 전략의 수립 및 표준특허 확보 추진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추진
 - * R&D 성과평가 시 특허동향조사의 실시여부, 질적 수준 및 반영여부 지표 명시
- 차세대 콘텐츠의 창출·발굴 촉진 및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콘텐츠·브랜드·디자인의 창출 경쟁력 강화
 - * 범부처적 융합콘텐츠 개발·적용 프로젝트 발굴·지원, 디자인권 보호 대상·범위 확대
- 창의력 증진을 위한 제도·여건의 개선 및 외부 지식재산 자원 활용 촉진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 추진
- 창작자의 전문 창출역량 제고, 연구자 및 지식재산 관리기관의 역량 고도화
 - * 기관의 특허관리역량 진단 결과 및 지식재산의 질적 수준을 반영한 기관평가 개선

②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 및 국내외 보호 체계 정비

- 세계최고 수준의 신속·정확한 고품질 심사·등록 서비스 제공, 저작권 허위등록 방지 및 저작권 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
 - * 선진 특허청과의 심사공조 확대, 심사 절차의 국제적 통일화
- 불법복제 및 위조상품 유통에 적극 대응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통한 건전한 지식재산 유통질서 확립
- 해외 지재권 보호기반 조성 및 현지 침해 대응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 * 해외 지재권 소송보험제도 활성화, 동아시아 저작권 대체적 분쟁해결 기구 설립
- 지식재산 분쟁해결 제도의 정비를 통해 지식재산 관련 분쟁 해결의 신속성 및 전문성 제고

③ 지식재산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및 공정 이용질서 확립

- 지식재산 성과 확산체계의 선진화,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및 사업화의 지원을 통해 고부가 수익 창출 촉진
-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의 육성 및 지식재산 가치 평가, 금융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추진
 - * 국가R&D 성과물 및 국가핵심 기술에 대한 이전·거래 및 수출 절차 간소화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조성, 지식재산 경영 및 사업화 지원 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통한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의 육성
- 지식재산 권리남용·탈취 및 기술유출에 대한 대응체제를 확립하여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④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등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조성 및 지식재산 창출·법조·서비스·교육·실무 인력의 체계적·전략적 육성 추진
-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지식재산 연구기반의 강화 및 지식재산 정보·데이터의 보급 확산으로 지식재산 활동 고도화
 - * 연구노트 확산 지원본부 운영 등 연구노트를 활용한 지식재산 정보 관리 활성화
-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선도, 공적개발원조 확대,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 협력 추진

5 신지식재산 보호·육성 체계 정립

- 식물신품종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구축 및 제도 정비 추진
 - * 연구단지·센터 조성, 직무상 육종에 대한 보상 현실화, 개인 육종가 컨설팅 지원 등
- 생물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 강화로 미래 생명산업의 선도 기반 마련, 자원 주권 확보 및 수익 창출
- 전통자원 관련 국제적 논의 대응 및 제도개선, 전통자원의 체계적 발굴·관리, 창작·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
 - * 전통자원의 복원·재생기법 연구, 문화원형(문학·미술·민속·설화 등) DB구축
- 지리적 표시제도, 비전형적 식별표지(소리·냄새 등) 및 새로운 저작권 분야(퍼블리시티권, 방송 포맷 등) 보호 방안 연구 및 이용 활성화

(5) 향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 및 지자체(광역)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지식재산 기본계획(안) 수립 ⇒ 전문위·실무운영위에서 검토(8월)
- 관련 계획 및 정책과의 정합성 유지, 해외사례 분석·적용
-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개토론회·공청회 개최 ⇒ 지재위 의결(9월, 2차 위원회)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안)

2011. 7. 28.

국무총리실



목 차



I.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개요	1
1. 국가지식재산 전략의 필요성	1
2.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성격	2
3. 추진 경과	2
II.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과제	3
1. 글로벌 경제 환경과 지식재산	3
2. 주요 국가의 지식재산 정책 동향	5
3. 우리 경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8
4. 지식재산 현황과 과제	9
III. 지식재산 비전 및 목표	14
1. 비전 및 정책목표	14
2. 정책 방향	15
3. 단계별 추진전략	17
IV. 중점 추진과제	18
1. 지식재산 창출 분야	18
2. 지식재산 보호 분야	22
3. 지식재산 활용 분야	26
4. 지식재산 인프라 분야	30
5. 신지식재산 분야	34
V.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	38
1. 추진 방향	38
2. 추진 체계	39
3. 추진 일정	39

I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개요

1

국가지식재산 전략의 필요성

- 세계 경제는 토지·노동·자본 등 유형자산을 배경으로 한 산업시대를 넘어 특허·저작권·디자인 등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재산 시대”로 진입
 - 선진 기업들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원천인 지식재산의 축적·개발에 집중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
 - 선진국들은 대통령실(또는 총리실)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 전략을 강력히 추진
- 우리 경제는 '90년대 이후 요소투입 중심의 양적 성장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통한 혁신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필요
 - 저출산 및 고령화, 기후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내외적인 위험 요인을 극복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마련 시급
-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업 간 특허소송이 급증하는 등 “지식재산 전쟁”이 본격화
 - IT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대기업들이 특허소송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대응전략도 부재한 상황
-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미흡하여 국격(國格) 향상은 물론,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발명자·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미흡
- 최근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술 간 융합, 기술과 감성·문화의 접목 현상은 우수한 창의역량을 보유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

2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성격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12~2016) 지식재산 정책의 비전·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전략
 - 특히, 이번 1차 계획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립하는 지식재산 전략
- 정부·민간 합동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민간위원)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전략
 - 「지식재산 기본법」(제8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하는 법정계획
-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지식재산에 관한 최상위 계획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을 종합하고 체계화 하는 실천계획
 - * 각 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3

추진 경과

-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범정부적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 마련('09.7.29)
 -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등 주요 과제의 실효적인 추진을 위해 총리실에 '지식재산정책협의회'(의장: 국무총리실장) 설치('09.10.27)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공포('11.5.19) 및 시행(7.20)
 -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통한 관계부처 논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비전·목표 및 정책방향(안)」 마련

II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과제

1 글로벌 경제 환경과 지식재산

- 세계경제는 상품의 가치가 물리적 생산비용이 아닌 창의성, 감성, 연구개발과 같은 지식노동에 의해 결정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
 -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토지·노동·자본 등 전통적인 유형자산에서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으로 변화
 - * Apple사의 무형자산 가치는 194조원으로 시가총액(215조원)의 90%차지('10년)
 - * IBM사의 순자산은 23조원인 반면 무형자산인 브랜드 가치만 65조원(순자산의 2.8배), 삼성전자의 순자산은 38억원, 브랜드가치는 19조원(순자산의 0.5배) ('10년)
- 선진 기업들은 핵심 지식의 축적 및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지식재산 중심의 경영전략을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
 - 기업의 가치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게 되면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능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



- 지식기반 경제는 기술 간 융·복합을 넘어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창조경제'로 진화되면서 무한한 가능성의 新시장(Blue Ocean)을 창출
 - 콘텐츠, 디자인 등 지식재산이 제조업과 접목되면서 단기간에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 Apple, Google 등 글로벌 기업들은 '콘텐츠-미디어-기기-서비스'의 창조적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선점

- 과학기술 발전 등에 따라 특허·저작권 등 전통적 지식재산권 외에 새로운 영역의 지식재산(新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
 - 기존의 제도로는 보호되기 어려운 전통지식, 식물신품종, 지리적 표시 등의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
 - * WIPO(세계지식재산기구)는 전통지식, 유전자원 등에 대한 보호체계 논의 중

- 지식재산이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자원으로 등장함에 따라 기업 간 지식재산을 둘러싼 ‘총성 없는 두뇌전쟁’이 치열하게 전개
 - 특허 등을 무기로 시장을 선점하거나 경쟁기업을 공격하여 시장을 방어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도모
 - * 지재권 소송의 급증(미국) : ('90년) 921 → ('07년) 2,901건
 - * 특허를 매입하여 기업들을 공격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소위 ‘특허괴물’ 등장
 - 표준경쟁에서 승리한 기업은 시장을 안정적으로 독점하나, 패배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군소기업으로 전락

- 국가 간 무역거래에 있어서도 지식재산이 주요 쟁점사안으로 대두
 - 보호무역의 주요 수단이 반덤핑 제소에서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기반한 수출입 금지 등 강력한 국경조치로 변화
 - * 미국의 경우 반덤핑을 통한 무역제재는 '98년 이후 감소(연평균 Δ 2%)하는 반면, 특허침해를 근거로 한 수입금지 결정은 급격히 증가(연평균 15%)
 - 다자·양자(FTA) 간 통상협상 과정에서 각 국가는 자국에 유리한 지식재산 제도의 관철을 위해 노력
 - * 중국·인도 등 자원부국은 전통지식에 대해, 유럽은 지리적표시의 보호 강화에 집중
 - * 한·EU FTA 후속입법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 → 70년으로 연장('11년 개정)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찰하고, 이를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활용 필요

2

주요 국가의 지식재산 정책 동향

-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지식재산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천임을 인식하고 이미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제를 구축
 - 자국의 지식재산 위상에 따라 전략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하여 기업들이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

1

미 국

- '80년대 하이테크 산업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등 일본에게 제조업 경쟁력을 위협받게 되자 親지식재산(Pro-IP) 정책에 집중
 - '85년 산업계는 “국제경쟁력-새로운 현실”이라는 보고서에서 국가 경쟁력 회복을 위해 무역정책과 연계한 강력한 지재산 보호정책 제안
 - * 컴퓨터프로그램('81)·반도체배치설계('84)·소프트웨어('94) 특허 도입 등 지재산 제도 개편
- '08.10월 정부 기관들 간의 협력·조정 강화와 인력·예산의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조직의 우선화 법」(PRO-IP 법) 제정
 - 대통령실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장관급)을 신설하여 연방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
- '10.6월 「자원·조직의 우선화 법」에 근거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인 “지식재산집행 공동전략” 수립
 - 정부의 모범사례 제시, 효율성 및 협력 강화, 미국 지재산의 국제적 집행, 정보기반의 정부 구축 등 6대 분야의 33개 실행과제 제시

“우리의 지식재산을 공격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위대한 자산은 미국 국민들의 혁신, 독창성 및 창의성이다.” <오바마 대통령>

2 일본

- '90년대 이후 신흥개도국의 급성장으로 산업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이 발생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을 표방('02년)
 - '02년 「지적재산기본법」 제정,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총리) 설치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제를 구축

- '03년 이후 매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도·정책을 강화
 - 초기에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다, 점차 콘텐츠·국제표준 획득 등 전략 분야를 선택하여 역량을 집중
 - * 기술무역 수출액이 '02년 110억불에서 6년만인 '08년 215억불로 대폭 증가

“연구 및 창조 활동의 성과를 지식재산으로서 전략적으로 보호·활용하여 일본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고이즈미 총리>

3 중국

- 선진국과 달리 축적된 지식이 부족하여 지식재산 전략 추진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정부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체제를 정비
 - '05년 「국가지식산권전략제정위원회」(위원장 : 부총리)를 설치하고, '08년 “국가지식산권전략 강요*”를 수립하는 등 능동적으로 정책 추진
 - * 제도정비, 창조·이용 촉진, 보호강화, 남용방지, 문화배양의 5대 전략 마련

- 지식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백·천·만 知識產權 인재공정”(‘07~‘10년) 등 인재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매년 “지재권 보호 행동계획” 수립
 - * '10년 중국은 특허출원건수에서 일본을 제치고 2위로 도약(1위 : 미국)

“지식재산은 과학기술, 인적자원과 함께 국가 3대 전략” <원자바오 총리>

4

유럽

- EU차원에서 지식재산권 제도의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11.4월 EU집행위원회는 EU 내 단일 특허시스템의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일 시장법」을 발의(25개 회원국 승인)
 - '08년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글로벌 지식기반 경제의 도전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유럽 산업재산권 전략 2008*”을 발표
 -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제도 도입 추진 등 제도적 강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개도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침해방지 추진
- * 산업재산권 전략으로 고품질, 적정성, 일관성, 균형 등 4대 영역의 과제 추진

5

향후 전망

- 각국은 우수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방어하기 위한 기업 간의 경쟁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
 - 기업 간의 시장 주도권 확보 경쟁이 국가 간의 정책 경쟁으로 전이
- 각국은 특허 등 지재권 심사품질 향상과 사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한편,
 - EU의 단일 특허시스템 구축 추진에 대한 자극으로, 아시아 등 각 지역별로 특허시스템의 협력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 지식재산의 보호와 무역정책과의 연계가 다자 및 양자(FTA) 간 무역협상 과정을 통해 확산되는 가운데
 - 지리적표시, 생명자원, 전통지식 등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을 선점하기 위한 국간 간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

3

우리 경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 우리 경제는 미흡한 부존자원 속에서도 수출주도형 양적 성장전략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창출하였으나,
 - '90년대 이후 노동과 자본 투입이 둔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요소투입 중심의 양적 성장전략이 한계를 표출
 - * 잠재성장률 추이 : 6%대 중반(90년대) → 4%대 중반('01~'07년) → 4.3%('10~'11년)
- 두 차례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외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운 수출과 내수 간 균형발전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
 -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대내외적인 위험요인을 극복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마련도 요구
- 지식재산 분쟁이 IT·전자분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지식재산이 우리 기업들의 주요 경영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
 - 한편,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원천·표준 특허 등 핵심적인 지식재산을 확보하는 경우 글로벌 시장 선도 가능
 - * 한국기업의 해외 특허분쟁(건) : ('06) 47 → ('07) 89 → ('08) 127 → ('09) 106
- 최근 신(新)한류로 콘텐츠 산업 및 관련 산업의 수출 증가율 증가
 - 콘텐츠 뿐 아니라 제조업의 브랜드가치 상승 및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
- 점차 전 세계로 확산되는 기업 간·국가 간 지식재산 전쟁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오랜 역사와 고품격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교육수준이 접목된 우리의 인적자원은 극도의 창의역량 발현 잠재력을 보유
 - * 국민 IQ 순위('02년) : (1위) 홍콩, (2위) 한국, (3위) 일본

우수한 창의 유전자를 내재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우리나라에게 있어, 「지식재산 중심의 창조형·지식기반형 성장」이야말로 최적의 발전전략

4

지식재산 현황과 과제

1

지식재산 '향출' 분야

-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등에 따라 지식재산의 양적 규모는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으나, 질적 생산성은 아직 미흡한 상황
 - '07년 연구개발 투자 세계 7위(GDP대비 비중 3위) 및 특허출원 4위, 과학 기술 논문수 12위 등 양적성장에 비해 기술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지속 확대
 - * 기술무역수지(억달러) : ('90) △10.7, ('95) △18.4 ('00) △28.6, ('05) △29.0 ('09) △48.6
- 지재권 전쟁시대에는 강한 지재권으로 무장한 기업만이 생존 가능하나, 우리 기업의 '강한 지재권' 창출 및 확보는 미흡
 -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담조직 강화, 표준특허 창출 등 지식재산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는 미흡
 - *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에 신고된 표준특허 중 3.3%만이 한국 특허('10년)
 - 인력·정보·자본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전략은 거의 전무
 - * '00~'05년 기간 특허출원 기업 중 3.6%를 차지하는 대기업을 전체 출원의 75.4% 차지
- 대학·공공연구기관은 잠재역량에 비해 지식재산 창출 성과가 미흡
 - 박사급 인력의 82.3%를 보유하고 국가R&D 투자의 24.6%를 사용하고 있으나, 우수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출원 비율은 11.2%에 불과('08년)
 - * Nature, Science 등 주요 저널의 논문 당 특허 출원건수 : 미국 5.74, 한국 3.15('07)
- 콘텐츠 창출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기기-콘텐츠-서비스) 조성의 한계 및 인력·시설 등 인프라의 미흡으로 고품질 콘텐츠 창출 저조
 - 3D·CG 등 첨단영상제작기술은 선진국 비교시 3년 이상의 기술 격차
 - 영상제작의 대형화·첨단화·글로벌화를 위한 시설 및 인프라 취약

2

지식재산 '보호' 분야

- 그간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강화한 결과, '09년 이후 3년 연속 미국의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는 등 개선되고 있으나,
 - 지재권 보호 순위는 세계 32위(IMD, '10년)로 여전히 미흡한 수준
- 해외(중국, 동남아 등)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침해가 확산되는 추세이나, 침해구제 지원 인프라가 열악하여 효과적 대응 한계
 - * 위조품 유통에 따른 국내기업의 수출 피해액 : 약 17조원('06년)
 - 국내 기업의 핵심·첨단 기술의 해외유출 피해도 지속적으로 확산
 - * 해외 기술유출 건수는 '03년 6건에서 '10년 41건으로 약 7배 증가, 그 규모도 확대
 - 최근 지재권 무효율 증가와 함께 지재권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 증가
- 불법복제물 및 위조상품의 불법유통에 따른 시장질서 왜곡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지재권 침해 문제가 심각
 - * 웹하드·P2P 등을 통한 불법복제저작물의 침해 규모는 1조 4,251억원('09년)
 - 스마트 폰·태블릿 PC 등 새로운 디지털 저작물 유통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첨단 저작권보호기술 개발 필요
 - * 디지털 저작권 보호·유통 기술은 미국 대비 83.4%로 3.8년의 격차 존재
- 특히 관련 소송 관할권의 이원화*에 따라 분쟁의 장기화, 판결의 비밀관성 등 비효율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 신속·경제적인 분쟁해결 수단인 조정·중재 제도의 활용은 부진
 - * 심결최소소송 ⇒ 특허법원, 특허침해소송 ⇒ 일반법원
- 콘텐츠산업의 자생력이 취약한 가운데 패러다임 변화 대응능력 미비
 - 협소한 내수시장 위주의 산업구조 하에 기업의 영세성, 불법복제 상존 등으로 시장이 미성숙(매출 10억원 미만 81% 차지, '09년)

3

지식재산 '활용' 분야

- 대학·공공연구 보유 기술의 이전·사업화 등을 통한 산업적 활용은 개선 추세이나, 선진국 등과 비교해서는 큰 격차가 있는 상황
 - 대학의 특허 사업화율은 29.3%('09)에 불과, 72.0%의 특허가 미활용 되면서 동시에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는 등 특허관리 전략 부재('09)
 - 연구개발비 투입에 비해 기술이전 수입이 적어 연구생산성이 미흡
 - * 대학·공공연구의 기술료수입('09년)은 0.87억 달러, 미국 대학·연구소(33.9억 달러)의 2.6%
 - * 주요 대학 R&D생산성(기술료수입/연구개발비)은 1.0%미만, 해외 대학은 6~10%('09)
- 지식재산이 독립적인 수익창출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있으나,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 생태계는 미성숙
 - * 지식재산에 투자하여 사업화 하는 시장은 세계적으로 연 35%씩 급성장('08)
 -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시장의 낮은 신뢰도와 투자 위험 분산을 위한 금융 제도 부족으로 지식재산 거래 및 민간 자본 투입 저해
 -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중 기술금융 비중은 6.6% 수준에 불과('07)
-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지식재산 활용의 다양화·고도화 등에 따라 지식재산 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 국내 업체들은 영세한 규모와 경험 부족으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 한계
- 우월적 시장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지식재산 거래 관행이 지속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유용, 콘텐츠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특허권 남용 등에 대응한 공정질서 확립 시급
-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수요는 급증하나, 활성화 여건은 미성숙
 - * 공공저작물을 활용하려는 민간의 수요 : ('07년) 39.3% → ('10년) 51.6%
 - 공공저작물의 민간 재활용 시 경제적 파급효과는 10조원으로 추산 ('06년)되나, 공공저작물의 문화·산업적 활용 정책 및 제도가 미흡

4

지식재산 '인프라' 분야

- 지식의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증대되고 있으나, 타인의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 인식과 지재권 침해에 대한 범법의식이 저조
 - 발명가·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미흡하여 창출→보호→활용→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사이클의 선순환에 장애
- 지식집약적 고도기술 수요 증가, 기술간 융·복합 강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 간 공동연구의 필요성 증대
 - 공동연구 성과물의 소유권 귀속 등과 관련한 인식 차와 갈등이 기술혁신 및 산·학 협력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고 있으나,
 -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 단계별로 세분화·전문화되는 시장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체계 미흡
- 국가 전체차원에서 중장기 지식재산 전략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부재
 -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 등 개별 권리별로 담당 부처가 산재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 및 집행 곤란
 - * 산재권(특허청), 저작권(문화부), 생물자원(교과부·농식품부·지경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식약청)
- 지식재산 관련 정책인프라가 불충분하여 체계적인 정책수립에 한계
 - 정부지원 및 민간투자가 저조하여 고품질의 지식재산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반 취약
 - 지식재산 정보가 소관 부처별로 상이한 분류체계와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고 있어 포괄적·종합적 정보제공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

5

‘신지식재산’ 분야

- 생물자원은 의료, 에너지, 환경, 식량 등 국가 필수 자산의 기반으로서 활용가치가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으나, 체계적 확보 시스템은 미흡
 - * 생물자원(유전자원, 생물체, 개체군 및 그 외 생물적 구성요소)은 한반도에 약 10만 종이 분포하나, 기록 종은 3만6천여 종(36%)에 불과(‘11년)
- 국제적 식물신품종 보호 강화로 품종보호 대상·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로열티 부담 증가, 생물자원 관련 종합적 관리 체계도 미흡
- 전통식품, 전통의약, 전통예술 등 전통자원의 부가가치가 점차 부각되고 있으나, 보호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 부재
 - 국내에 관련 DB구축이 부진하여 보호수준은 초기 단계이고, 세계적으로 보호방식이 통일되지 않아 국제적 권리 보호가 곤란
- 새로운 식별표지(지리적 표시, 소리·냄새 등 비전형 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가 미흡하여 경제적 가치를 보전해 주는데 한계
 -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한 국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FTA 등 국제 교역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및 국내 지리적 표시제도 정비 필요
 - * 유럽은 포도주, 치즈 등 다양한 지리적 표시 상품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요구하나, 미국은 지리적 표시 보호 강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
- 창작활동 범위의 확대 및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기존 저작권 법 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한 새로운 저작권 보호 분야가 등장
 - 퍼블리시티권(초상·성명 등 초상재산권), 방송 프로그램 포맷, 글자체 디자인 등에 대한 라이선싱 및 관련 분쟁 점차 증가
 - * ‘11년 글로벌 방송 프로그램 포맷 시장 규모는 30억 유로(약 4조원)로 추산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저작물의 공유 및 사적 복제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 변화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

Ⅲ 지식재산 비전 및 목표

1 비전 및 정책목표



5대 분야	20대 중점추진과제
가 치 있 는 지 식 재 산 창 출 촉 진	1.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제도 개선 2. 콘텐츠 및 브랜드·디자인 글로벌 경쟁력 강화 3.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4. 지식재산 창출 역량 제고
지식재산 보호의 실 효 성 확 보	5. 지식재산 심사·등록의 안정성 제고 6.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 7. 해외에서 우리 지식재산 보호 강화 8. 지식재산 분쟁해결 제도 정비
지식재산 신산업 창출 및 공정한 활용 질서 구현	9. 지식재산을 활용한 고부가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10.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 11.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 12.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13. 지식재산 공정사회의 구현 14. 지식재산 인력의 양성 15. 지식재산 활동 고도화 기반 구축 16. 지역 및 글로벌 지식재산 네트워크 구축
신 지 식 재 산 보호·육 성 체 계 정 령	17. 식물신품종의 지식재산 체계 구축 18. 생물자원의 발굴·보전 및 활용 촉진 19. 전통자원의 가치 창출 및 활용 기반 마련 20. 식별표지 및 새로운 저작권 분야 제도 개선

1 가치 있는 지식재산 창출 체계로 전환

- 원천·표준 특허, 차세대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의 창출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세계시장 선점 및 기술무역수지 적자 해소
 - 특허·표준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콘텐츠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합한 기기-콘텐츠-서비스 선순환 생태계 조성
- 발명자·창작자의 창의력 발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환경의 개선 및 외부 자원 활용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기반 확대
 - 기초·응용·개발 등 연구개발 특성을 반영한 지식재산 창출전략 추진 및 산학협력 활성화, 콘텐츠 제작·유통·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2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 및 국내외 보호체계 정비

- 산업재산권 심사처리 기간의 단축 및 품질 제고, 글로벌 심사협력 강화 등을 통해 권리의 안정성 제고
- 디지털화 등 변화된 유통환경에 대응한 기술개발, 국경조치 강화 및 수사 인력·기법의 역량 제고 등 지재권 침해 대응 체계 재정비
 - 산업기술·영업비밀의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 해외 지재권 지원 기관의 기능 강화 및 일관적·체계적인 지재권 관련 통상대응 체제 구축 등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수익 누출 방지
- 소송절차를 간소화·전문화하고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 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도모

3 지식재산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및 공정 이용질서 확립

- 기술의 이전·사업화 등 연구성과 확산 체계의 선진화,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지식재산의 부가가치 극대화
 -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지원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서비스 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전략 지원, 공공보유 지식재산 활용 활성화
- 지식재산권의 남용 방지, 기술탈취 및 유용 예방 시스템 확립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구현

4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발명·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기반 구축,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등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 강화를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 및 친(親)지식재산 문화 조성
 - 다양한 시장수요에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실무인력 역량 강화, 대학 등 연구기반 강화 및 지식재산 정보 유통·활성화 기반 정비
 - 정부·지자체·민간을 포함한 범국가적 지식재산 정책체계 구축,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선도,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5 신지식재산 보호·육성 체계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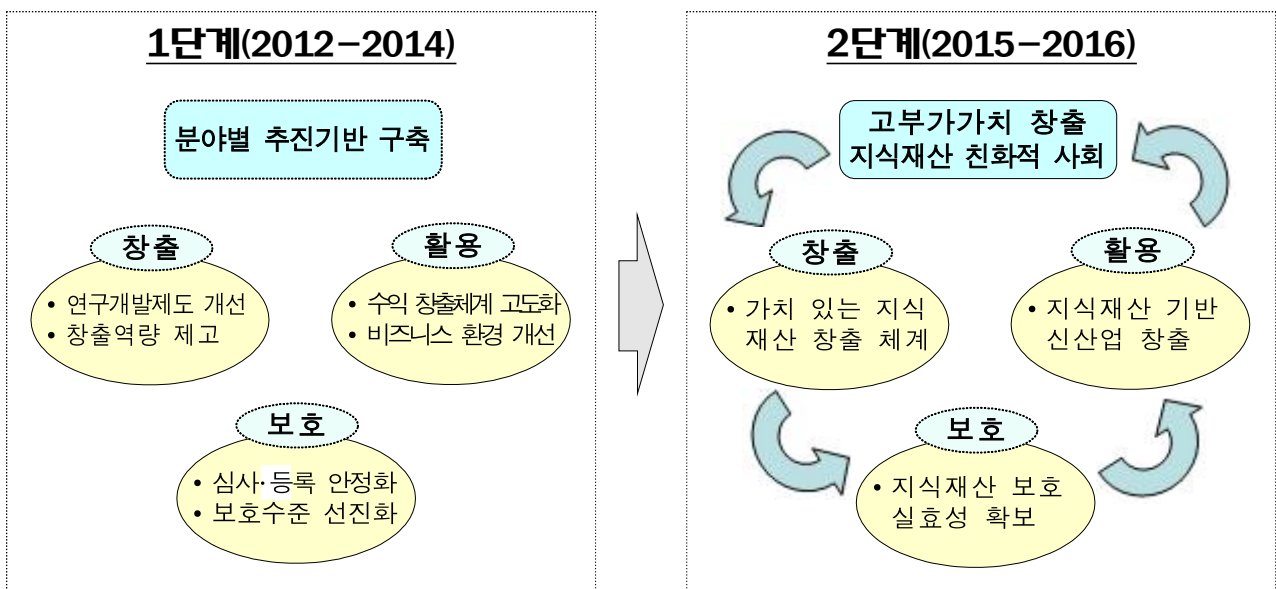
- 식물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지식, 지리적표시 등 신(新)지식재산 가치 발현 및 보호,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행정적 기반 마련
- 신지식재산 보호·활용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

□ 1단계(2012-2014년) : 지식재산전략 추진 기반 구축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각 분야별 원활한 지식재산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식재산 활동 주체의 역량 강화
- 창출·보호·활용 각 분야의 균형발전 및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법령·제도 정비
-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전문인력 양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지식재산 전략 추진을 위한 사회 인프라 조성

□ 2단계(2015-2016년) : 지식재산을 통한 부(富) 창출 메커니즘 구축

- 「창출→보호→활용→고부가가치 창출→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선순환 체계 완성 및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조성
- 지식집약적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지식재산 중심의 창조형·지식기반형 성장전략 본격 추진
- 지식재산 전략을 산업발전 전략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IV 중점 추진과제

1 지식재산 '창출' 분야

1 고품질 지식재산 향출을 위한 연구개발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 확대(10년, 5년간 연평균 11.4% 증가)에 따라 연구개발 효율성 및 연구 성과에 대한 관심 증대
 - 국가 연구개발을 통한 논문의 양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고품질 지식재산의 창출은 미흡한 상황

추진 목표

- ▷ 연구개발 전주기적·단계별 지식재산 창출 전략 수립 및 표준 특허의 전략적 확보 추진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 주요 추진과제

- 국가R&D 기획 시 특허정보 활용 의무화 확대 및 점검 강화*, 관리 시 지재권 전문가 참여, 발명자 인터뷰 추진 등 R&D 효율 제고
 - * R&D 성과평가 지표에 특허동향조사의 실시여부, 질적수준 및 조사결과 반영여부 포함
- 국가R&D 평가시 과제 규모·성격에 따른 유연한 평가제도 운영, 4대 연구성과별(논문, 특허, 기술이전·사업화, 인력양성) 질적 평가 강화
 - * 도전적 과제의 경우 성실실패 시 제재 최소화, 연구개발 과정 및 결과의 종합적 평가
- 순수·목적 기초연구(창의성 극대화, 논문 중심) 및 응용·개발 연구(특허 확보, 성과창출 중심)등 연구개발 단계별 지식재산 창출전략 수립
- 표준 R&D 기획, 수행 평가 등 전주기에 걸친 R&D - 특허 - 표준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표준특허 전문인력 양성 등 표준확보 기반 마련
- 국가R&D 사업비 중 지식재산 경비의 비중 확대 및 탄력적 운용

2

콘텐츠 및 브랜드·디자인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추진배경

- 고부가가치 콘텐츠 창출을 위한 콘텐츠-기기-서비스 생태계 조성
미흡,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 창출 인력·기술·시설 미흡
- 브랜드·디자인은 제품·서비스 구매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기술수준(특허출원)에 비해 브랜드 가치는 상대적으로 저조

추진 목표

- ▷ 차세대 콘텐츠의 창출·발굴 촉진 및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콘텐츠·브랜드·디자인의 국제 경쟁력 강화

□ 주요 추진과제

- 콘텐츠·기기의 개발, 시범 적용 및 활성화 간의 상호 연계를 위해
범부처적 융합콘텐츠 개발·적용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 (예) U-health서비스 : 콘텐츠 개발(문화부), 진흥정책(복지부), 기술개발(지경부), 시범실시(행안부)
- 3D·홀로그램 등 차세대 콘텐츠 창출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 첨단
스튜디오 지원 등 차세대 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
- 글로벌 킬러콘텐츠의 제작·발굴 지원을 위해 글로벌 프로젝트
펀드 조성, 국제공동제작 지원 및 방송콘텐츠 포맷* 산업 육성
* 시나리오, 연출, 캐스팅, 무대장치, 홍보 등의 노하우 수출로 부가가치 창출
- 전통문화유산 명칭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외국 상표청에 전통
문화유산 영문명칭 제공, 국제상품분류에 일반상품명으로 등재 추진
* 비빔밥, 불고기, 태권도 등 전통문화유산 명칭에 대한 외국인의 상표등록 방지
- 디자인권 보호 대상·범위* 확대 및 디자인 출원·심사요건 완화 추진
* 그래픽 심벌, 로고, 표면문양 등 평면 디자인 자체도 보호 가능

3

향포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 추진배경

- 지식재산 창출의 기반이 되는 창의성의 수준은 저조한 상황
 - * 창의성에 기반을 둔 ‘혁신성’과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경쟁력’은 30위권(IMD), 국가별 창의성 지수는 15개국 중 11위(OECD, '10년)
- 내·외부 아이디어 및 자원의 효율적 결합을 통한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인력·자원의 연계·협력 필요

추진 목표

- ▶ 창의력 증진을 위한 제도·여건의 개선 및 외부 지식재산 자원 활용 촉진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 추진

□ 주요 추진과제

- 정규교과 및 방과후 활동을 통한 창작체험 교육, 디지털 환경에 따른 온라인 교육 시행 등 창의력 증진 교육 활성화 추진
-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문화콘텐츠 제작자·스태프의 처우 개선*, 연구기관의 실험·실습 기자재 정비 및 첨단장비 확충 추진
 - * 임금체불된 작가·스태프의 인건비 간접지원, 창작공간 확충 및 작가조합 설립 등
- 소규모 연구자 그룹의 기초연구비 지원 확대, 고위험-고수익형 연구의 성실실패 용인 등 도전적·창의적 연구지원 강화
-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 강화, 국제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확산 및 국제공동연구자 지재권 교육 추진 등 국내외 공동연구 활성화
- 해외 우수 지식재산 인력 유인 환경* 조성 및 해외 지식재산의 신속한 도입·활용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지식재산 창출 촉진
 - * 비자절차 및 시민권 획득 기회 간소화, 거주비용 지원 등 국내 정주 여건 개선

4

지식재산 창출 역량 제고

□ 추진배경

- 문화콘텐츠 산업의 공급인력이 풍부*함에도, 사업기획·마케팅·홍보·연구개발 등 고급 전문인력은 부족

* '18년까지 매년 4만~5만명의 인력공급 과잉 전망('10, 콘텐츠진흥원)

-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R&D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연구자 및 지식재산 관리전담기관(TLO 등)에 요구되는 지식재산 소양이 강화

* 연구능력 외 미래시장을 고려한 연구주제 선정 능력, 고품질 지식재산 획득 능력 등

추진 목표

- ▶ 창작자의 전문 창출역량 제고, 연구자 및 지식재산 관리기관의 역량 고도화를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촉진

□ 주요 추진과제

- 콘텐츠 제작 스태프 관례적 휴직(실업)기간 중 교육·훈련* 실시, 국내외 대학의 콘텐츠 관련 과정 연계를 통한 창출역량 제고

* 고급·신기술 교육, 영화·방송 등 분야별 맞춤 교육, 지역 순회교육

- 대규모 연구과제 참여자의 지재권 교육이수 의무화, 연구자-지재권 전문가 간 교류 지원, R&D 유형별 지식재산 창출전략 매뉴얼 보급

-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개선*, 기관의 특허관리역량 진단 결과 및 지식재산의 질적 수준을 반영한 기관평가 개선

* 우수TLO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 지원, TLO가 R&D 전(전) 과정(기획·관리·평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 강화, 전문인력 확충, TLO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주요 산업분야의 지재권 선점가능성을 고려한 기술로드맵* 작성, 기업 지재권 경영전략 컨설팅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 지식재산 관점에서 원천성·시장성·성장가능성 측면에서 유망기술 도출

2

지식재산 '보호' 분야

5

지식재산 심사·등록의 안정성 제고

□ 추진배경

- 신속한 권리행사 및 권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증대
 - * 지식재산의 양적 성장 및 고품질 특허심사 요구로 심사 처리기간 증가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므로 형식심사 원칙을 악용한 허위등록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시장 유통질서 왜곡 초래

추진 목표

- ▷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정확한 고품질 심사·등록 서비스 제공, 저작권 허위등록 방지 및 저작권 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

□ 주요 추진과제

- 심사 능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의 개선, 외부 전문 조사기관의 품질관리 체계 강화 등을 통한 심사 지원
- 심사관 교육 및 심사 노하우 공유를 통한 역량 강화, 심사 물량 증가 추이를 감안한 심사인력의 효율적 운용
- 선진 특허청과의 심사공조 확대, 심사 절차의 국제적 통일화, 국제적 조약을 반영한 국내법 개정 등 심사 효율성 제고
- 지재권의 실효성 및 안정성 우려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특허권 보호 현황 조사 추진
- 명백한 저작권 허위등록시 직권 말소 가능토록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 등록자문위 구성·운영 등 저작권 심사·등록제도 개선
- 허위등록 방지를 위한 저작물의 디지털화, 비교·검색 시스템 구축

6

국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

□ 추진배경

- 지식재산이 효과적으로 보호되지 않아 성장 잠재력 훼손 및 창조 경제로의 도약에 걸림돌로 작용
 - 불법복제 및 위조상품 유통 등 지식재산 침해 심각하며, 기술의 발달로 불법 복제의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온라인 불법 저작물의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조 7,635억원 추산('10년)

추진 목표

- ▷ 불법복제 및 위조상품 유통에 적극 대응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통한 **건전한 지식재산 유통질서 확립**

□ 주요 추진과제

- e-Book 등 새로운 콘텐츠 유통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기술개발, 웹하드·P2P 등 특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관련 제도* 개선
 - * 특수한 유형의 OSP 등록제, OSP를 통한 불법저작물 유통시 처벌 강화 등
- 공공부문 정품SW 실태 점검, SW임치제도* 활성화, 오픈소스 SW 이용방법에 대한 인식제고 추진 등 정품 SW 이용문화 조성
 - * SW 거래 시 개발기업의 저작권 보호와 사용기업의 이용권 보호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SW 및 관련 기술정보를 예치해두는 제도
- 지식재산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강화를 위한 단속시스템 개선, 신고·침해여부 판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 수사전문인력(특별사법경찰) 확대 및 역량강화, 정부합동 특별 집중 단속 등 지식재산 보호집행력 강화 추진
- 국내기업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불법 유출방지를 위해 교육 확대 및 인식제고 홍보 강화, 효율적 보호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 * 기술자료 임치 활성화, 영업비밀 원본 증명제도 활성화 등

7

해외에서 우리 지식재산 보호 강화

□ 추진배경

- 우리 지식재산 경쟁력 상승으로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 및 지식재산권 침해 증가
- 지재권 침해 대응 인력 및 관련 정보제공 등 인프라가 미흡

추진 목표

- ▶ 해외 지재권 보호기반 조성 및 현지 침해 대응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 주요 추진과제

- 해외 지재권 침해실태 조사 및 관련 정보·동향 제공,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지재권 침해 예방 인프라 구축
 - * 해외 거점 및 문화별 저작권 비즈니스 인력,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전문 인력
- 체계적인 지재권 관련 통상대응 시스템 구축, 지재권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체계 강화
- 권리자 단체, 상공회의소 등 민간 중심의 지재권 보호단체 구성 지원, 해외 지재권 취득 지원 등을 통한 민간 자체 대응 역량 제고
-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기관(해외 저작권센터(Copyright Center),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등)의 증설 및 기능 강화
- 해외 지재권 소송에 대비한 보험제도 활성화, 동아시아 국가간 저작권 ADR(대체적 분쟁해결) 기구 설립 검토 등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 선진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지재권 보호 역량 강화 및 개도국과의 교류를 통한 지재권 보호기반 구축 등 국제 공조체계 확립
 - * 선진국의 민간 지재권 보호단체와 우리 민간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개도국 지재권 단속 공무원과의 유대관계 조성 등

8

지식재산 분쟁해결 제도 정비

□ 추진배경

- 지식재산 분쟁의 증가 및 소송기간 장기화에 따라 신속·정확한 분쟁 해결 요구 증대
-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ADR제도**(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는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

* 산재권 조정 신청건수('09) : 4건, 산재권 심판 청구 건수('09) : 15,583건

추진 목표

- ▶ 지식재산 분쟁해결 제도의 정비를 통해 지식재산 관련 분쟁 해결의 신속성 및 전문성 제고

□ 주요 추진과제

- 조정위원회 전문성 제고*, 분쟁조정 수요 발굴·홍보 및 저작권 위원회의 중재 기능 보완 등 **ADR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조정위원 확대, 연구·분석인력 확보, 공익변리사를 활용한 분쟁조사·합의권고안 작성

- 심판관 역량강화 및 심판 인력의 효율적 운용, 구술심리의 확대 등을 통한 심판 처리기간의 단축 및 심판 품질의 제고

* 심판관 교육 강화, 심판관 역량에 따른 목표 차등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추진

-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이원화된 특허소송 구조***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심결취소소송(특허법원)과 특허침해소송(일반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재판의 일관성·전문성 및 신속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 소송대리 허용 여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 현재 심결취소소송은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가능하나, 특허침해소송은 변리사의 단독 소송대리 또는 변호사·변리사 공동 소송대리 허용에 대한 찬반이 대립

□ 추진배경

- R&D 투자대비 이전·사업화 등 활용성과가 낮아 R&D 효율이 저조
 - * 연구 생산성(연구개발비 대비 기술료 수입): 미국 6.82%, 한국 : 1.35%('08)
- 지식재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보 시스템 및 거래기관의 활용도가 저조하며, 국유특허 및 공유저작물 활용이 미미

추진 목표

- ▶ 지식재산 성과 확산체계의 선진화,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고부가 수익 창출 촉진

□ 주요 추진과제

- TLO 등 지식재산 성과확산 기구의 역량 강화, 미활용 기술의 아웃소싱을 통한 이전 추진 등 공공분야의 성과 확산* 추진
 - * 대학·공공(연)의 보유 유망 기술 사업화 지원,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제도의 개선
- 지식재산 정보시스템* 및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의 확대 개방 (음악·어문 → 방송물·미술·사진 등까지 확대)을 통해 활용 활성화 추진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등
- 기술사업화 기업(연구소기업, 기술지주회사 등),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기술 창업자의 창업·운영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및 인센티브 부여
 - * 창업 초기단계 펀딩 갭 해결을 위한 펀드, 장기 상환 대출 펀드 등
- 정부 보유 지식재산(국유특허, 공공정보 등) 활용 촉진, 저작권 나눔 활성화, 공공저작물 관련 제도 정비 및 관리 기준(이용 허락 절차 등) 제공
 - * 민간기업의 29.1%가 저작권 문제로 공공저작물 활용 보류('10년)
- 중소기업 지식재산 사업화(지식재산 가치평가, 수출 마케팅 등) 지원 강화

10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

□ 추진배경

- 해외의 특허관리회사(NPE)로 인해 국내 제조기업의 특허 소송 위험 및 로열티 부담이 증가
- 반면, 지식재산 비즈니스*가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로 부상하고, 지식재산 보유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의 기회로 작용

* 아이디어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매입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후에 기업에 라이선싱을 통한 로열티나 매각 등으로 수익을 회수하는 비즈니스

추진 목표

- ▶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의 육성 및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융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 주요 추진과제

- 국가R&D 성과물 및 국가핵심 기술에 대한 이전·거래 및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장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 창의자본 조성·운용, 지식재산관리회사(NPE)의 육성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정착 추진
- 지식재산 신탁형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기술신탁 관련 제도 개선
 - * 기술신탁 관리업 허가방식 개선, 신탁관리자의 소송권리 명문화, 신탁자산의 수익배분 관련 법적 근거 보완 등
- 저작권 신탁제도 정비, 저작권 관리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효율적 이용환경 조성
-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의 전문화·세분화를 위한 다양한 평가 모델의 개발, 평가 시스템 개선 및 평가 사례 축적·확산
- 기술가치평가 결과의 금융 상품과의 연계, 콘텐츠 관련 기업에 대한 투·융자 제도 활성화 등 민간의 지식재산 투·융자 촉진

11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

□ 추진배경

- 지식재산 활동이 고도화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재산 활동을 위한 외부 지원이 필요하나,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기반은 부족
 - 지식재산 산업 시장 규모가 영세하고, 역량이 부족하며,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인프라가 미흡한 상황
-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활동에 대한 정보조사·분석, 평가, 교육, 번역, 거래, 컨설팅, 제품인증 등 전문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추진 목표

-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조성, 지식재산 경영 및 사업화 지원 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통한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의 육성

□ 주요 추진과제

- 실태 조사·분석 및 산업 분류체계 마련,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 지식재산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개설 및 전문 교육기관 지원 등을 통한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촉진
-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R&D* 투자 확대 및 서비스 산업 분야별 전문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등 서비스 품질 고도화 기반 구축
 - * 지식재산 정보 분석 및 번역 툴 등의 개발 및 개선
- 국가 R&D의 특허정보조사 확대, 중소기업 및 지자체의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 확대 등 지식재산 서비스 수요 창출
- 산업별 실증단지* 및 시험분석 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해 향후 블루오션 분야의 시장 선점 및 지식재산 활용 촉진
 - * 신성장동력산업별 실증단지, 건설분야·환경분야 등의 시제품 실증단지

12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추진배경

- 핵심 특허를 선점한 기업의 권리남용* 등 지재권의 불공정한 활용이 후속 혁신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증대

* Q社에 대해 표준특허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공정위, '09)

- 하도급 거래 등에서 대·중소기업간 기술유출 및 탈취 사례가 증가하여 기업 간 신뢰기반 약화 및 중소기업의 생존 위협

추진 목표

- ▶ 지식재산 권리남용·탈취 및 기술유출에 대한 대응체제를 확립하여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주요 추진과제

- 지재권 남용 이슈와 관련한 국제논의 대응 및 국가간·부처간 공조 강화(감시 및 규율 확립)

- 남용 심사지침 개선, 관련법령 개정 검토 등을 통해 규율 실효성 제고, 현실에 적합한 남용행위 조치기준 마련

* 남용행위 심사지침 내 '안전지대' 규정도입, 부실특허권 남용방지 지침 마련 등

- 모범거래기준을 보급하여 자율적 남용 시정 촉진, 해외 거주기업의 남용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지식재산 공정이용 협의체* 지원

* 저작권 상생협의체('09.9월 결성, 권리자단체·OSP·이용자 등 참여) 등

- 중소기업 기술자료 제공 강요 및 유용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 구축, 기술탈취·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통해 기술의 기부·공유 등 협력 문화 조성

□ 추진배경

- 지식이 '재산'으로서 가치가 증대되나, 지식재산 존중 의식의 부족 및 지식재산 사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 문화 미정착으로 피해 심각
- 지식의 창출·보호·활용 각 단계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필요하여,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제활동에 애로

추진 목표

- ▶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등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 주요 추진과제

- 범국민 소양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인식 제고, 범정부 홍보 협력 체계의 구축 등을 통한 친(親)지식재산 환경 조성
- 지식재산인(人)에 대한 복지 혜택 증진, 명예보전 등 대우 강화
 - * 최고 지식재산인 및 최우수 지식재산 기관의 선정·포상, 명예의 전당 운영 등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산학공동연구 및 공공발주* 협약체결 관행 등 개선 추진
 - * 정부용역으로 개발한 결과물(SW, 연구보고서 등) 소유권 귀속 합리화 추진 등
- 경제적 약자의 창출·보호·활용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재권을 보유·활용할 수 있는 균등 기회 제공 및 접근성 제고
 - * 법률 자문, 국제출원비용, 심판·소송비용, 시제품 제작비용, 가치평가 등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통한 지식재산 강소기업 육성
 - * 중소기업 지식재산 인력양성, 지식재산 경영지원 및 특허소송 역량 강화 등
- 소외계층 및 농어촌 지역의 지식재산 교육·상담, 컨설팅 지원 및 장애인에 대한 도서나눔·대체자료 제공 등 저작물 접근성 강화

14 지식재산 인력의 양성

□ 추진배경

- 최근 해외 기업의 특허공세가 증가함에 따라 우수한 지식재산을 창출·경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기업의 수요 증가
 - * 구글, MS, GE 등 세계 주요 기업은 우수기술 발명의 원천인 지식재산 인재 확보에 집중
-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 전략 부재로, 분산적·단발적 추진

추진 목표

▷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조성 및 지식재산 창출·법조·서비스·교육·실무 인력의 체계적·전략적 육성 추진

□ 주요 추진과제

- 지식재산 인력의 수급 현황, 미래예측 및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 인력 육성·활용 및 처우개선 등 중장기 계획 수립
- 학생 대상 지식재산 소양교육,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기술 인력 및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특별활동 지원
 - *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과정 중 지식재산 관련 교과 단원 및 강좌 확대
- 창의력이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여 기술·경영·지식재산 마인드를 고루 갖춘 전문기업인 또는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로 양성
- 지식재산 법조인력(변리사·변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리사 연수 제도·정보공개제도 도입 및 변리사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 경영층(CEO) 및 지식재산 전담인력의 지식재산 경영역량 제고
 - * CEO 대상 지식재산 포럼 및 연구회 활동 지원, 기업·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대상 실무형 교육과정 지원,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 활용 지원 등
- 교사·교수 지식재산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무연수 등 교육과정 확대 및 전문교육인력 처우 개선(성과와 승진·보상 연계, 경력 우대, 외부 인사 겸임 확대 등)
- 기술 발달 및 저작물 이용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 * 저작권 전문대학원 신설, 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저작권 교육의 확대 등

15 지식재산 활동 고도화 기반 구축

□ 추진배경

-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등 지식재산 전략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매우 지연
 - *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10여년 전부터 법률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연구의 양적·질적 부족 및 전문적 연구역량 미흡으로 체계적인 지식재산 정책 수립이 곤란한 상황

추진 목표

- ▷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지식재산 연구기반의 강화 및 지식재산 정보·데이터의 보급 확산으로 지식재산 활동 고도화

□ 주요 추진과제

-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의 취지에 맞추어 관련법령 제·개정 및 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 등 행정체계 정비 추진
 - * 지식재산정책책임관 지정·운영, 유관 위원회·부처·국회 등과의 협력 방안 마련
-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법인·단체의 운영경비 및 법인화 지원, 대학·공공(연)·산업계의 지식재산 연구 활동 지원 및 정책제언 기능 강화*
 - * 대학 - 공공(연) 지식재산 관련 공동연구 활동(R&D IP협의회 등), 공공 - 민간 지식재산 공동연구 활동, 산업계(KINPA 등) 연구 활동 등 지원
- 학회·포럼·세미나 등 지식재산 연구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지식재산 연구 결과물의 공유·확산 및 연구품질의 제고 촉진
- 지식재산 정보시스템 간 연계·업데이트 등 고도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여 기초통계 산출·분석·활용 활성화 및 지식재산 정보 접근성 제고
 - * 지식재산 표준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조사·분석·평가지 분류 기준으로 활용
- 연구노트 확산 지원본부 운영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연구노트를 활용한 지식재산 정보 관리 활성화

□ 추진배경

-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활동이 증대함에 따라 지식재산 분야의 국가 간 업무협력 및 새로운 지식재산* 규범형성의 요청이 확대

* 유전자원, 식물신품종, 전통지식, 지리적 표시 등

-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식재산 체계구축이 미흡하며,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협력은 현황 파악 및 교류채널 등 미비

추진 목표

- ▶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선도, 공적개발원조 확대,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 협력 추진

□ 주요 추진과제

- 지식재산 분야의 국가간 협력·네트워크* 및 법·제도 논의 확대를 통해 지식재산제도의 선진화 및 효율화 추진

* 지식재산 선진국과의 심사협력 확대, 국제적 논의 주도, 우수성과 확산 등

- 지식재산을 활용한 공적개발원조의 확대를 통해 국격 제고 및 신규 부가가치 창출 시장 발굴·선점

* 최빈·개도국에 적정기술 보급, 브랜드 획득 지원, 지재권 보호 교육, 저작권 관련 제도 확산 및 집행 지원 등

- 지역지식재산 조례 제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기반 조성, 지식재산 도시 조성 및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 강화

*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 집중 육성, 지역 특산품 및 전통산업의 브랜드 지원 등

- 남북 지식재산 법·제도의 현황 분석, 조화 방안 연구 및 정부·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채널 구축 등 기반 조성

17 식물신품종의 지식재산 체계 구축

□ 추진배경

- WTO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통해 품종보호 의무화('94), 품종보호 국가·대상식물 지속 증가('00)49→('11)70개국 ('98)27품종→('12)모든 식물
- 해외 품종의 국내도입 확대에 따른 로열티지출 증가, 국내 신품종 개발 및 식물신품종 보호권에 대한 침해·분쟁 대응력 강화 필요
 - * 식물신품종보호제도 : 신품종 육성자에게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지재산 제도로 종자(농어업 생산성·생산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 산업의 핵심 기반

추진 목표

▷ 식물신품종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구축 및 제도 정비

□ 주요 추진과제

- 민간 종자업체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단지·센터 조성, 인턴제를 활용한 인력양성, 전략품목 R&D 투자확대 등 품종개발 기반구축
- 종자위원회 직권조정권한 실효성 제고, 국경조치* 확대에 따른 품종식별 체계 마련 등 품종보호권 침해대응 강화
 - * 품종보호 침해 농산물 통관 배제 근거 마련, 종자유통조사담당관 사법경찰권 부여
- 직무상 육종에 대한 보상 현실화, 실용화재단을 활용한 산업화 촉진, 개인육종가 컨설팅 지원 등 신품종의 활용 촉진
- 종자산업법과 품종보호법 분리제정을 통한 출원·심사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권리화 추진, 품종보호제도 실시기관*간 효율적 연계
 - * 국립종자원(농작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산림),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수산)
- 심사지침 작성, 체계적 작물코드 정립, 심사·민원정보시스템 구축,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한 심사 효율제고 및 역량 강화

18 생물자원의 발굴·보전 및 활용 촉진

□ 추진배경

- 생물자원은 생명산업 발전의 필수자원이자, 에너지·환경·식량 등 인류의 난제를 해결할 핵심요소이자, 자원 주권*의 기반

* 자원은 '인류 공동자산' → 생물다양성협약의 발효로 소속 국가의 자원주권 인정('93)

- 밝혀지지 않은 생물종(미기록종, 신종) 발굴·실체규명·국제 공인화 필요

* 우리는 전세계 생물다양성 1억종 중 약100천종 분포, 기록종은 37%에 불과

추진 목표

- ▶ 생물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 강화로 미래 생명산업의 선도 기반 마련, 자원 주권 확보 및 수익 창출

□ 주요 추진과제

- 정기적 생물자원 보유현황 조사, 생물자원 발굴·확보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한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확보 기반 구축

- 생물자원 보존·관리의 국제표준화*, 시설·장비 확충, 기술개발, 전담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보존·관리 인프라 확충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보존·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국가 표준 생물종 분류체계 및 생물동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 생물자원 특성분석을 통한 가치 발굴, 유망 생물자원의 특허 출원 지원, 생물자원 정보시스템 표준화·연계 등 활용 기반 구축

- 생물자원 시설·장비 공동 활용,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등록·기탁 유도, 국제동향 및 예측정보 제공 등 생물자원 활용 환경 조성

- 생물자원에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범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해외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강화 추진

19 전통자원의 가치 창출 및 활용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전통의약·막걸리 등 전통자원*의 막대한 부가가치가 부각되고 있으나, 국내의 전통자원의 발굴, 현황 파악 및 보호 기반 미흡
 - * 전통자원: 전통지식(전통 의약·식품 등) 및 전통문화표현물(이야기·음악·춤·인형극 등)
- 전통자원 보호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 중이나, 선진국(유연한 보호 제안)과 개도국(구속력 있는 규범 설립 주장)간 입장차 현격

추진 목표

- ▷ 전통자원 관련 국제적 논의 대응 및 제도개선, 전통자원의 체계적 발굴·관리, 전통자원을 활용한 창작·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

□ 주요 추진과제

- 민·관 합동으로 전통자원의 현황파악, 현장사례 조사를 통한 국내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국제적 논의에 사전 대응 추진
- 고서·문헌·구전 및 유·무형 문화재로부터 전통자원 발굴, 체계적 관리를 위한 분류체계 설정 등 전통자원의 발굴 및 관리
- 전통자원의 복원·재생기법 연구, 문화원형(문학·미술·민속·설화 등) DB구축을 통해 콘텐츠 창작 소재로 활용 촉진
- 기존 지적권 법·제도 하의 전통자원 보호 방안* 연구, 전통예술 콘텐츠의 브랜드화, 전통지식을 활용한 신기술 개발 및 관광 테마화
 - * 전통문양, 음악, 춤 등을 사진, 음반 등 매체에 담는 방식 등
- 전통자원을 활용한 공연·전시 지원, 전통지식 계승자·전수자에 대한 보상 및 배려를 통해 전통자원 전승 활성화
- 전통지식DB 확대구축 및 PCT 최소문헌*화에 의한 전통지식보호 강화
 - * 국제특허 심사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선진 특허 문헌

20

식별표지 및 새로운 저작권 분야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국제화가 진행될수록 지리적표시 제품의 영향력이 증대되므로, 우리의 지리적 표시를 세계화·명품화 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 보르도와인, 샴페인와인, 노르망디의 까망베르치즈, 고려인삼 등
- 종래 상표권·저작권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비전형적 식별표지 (소리·냄새 등) 및 신(新)저작권 분야* 보호 방안 필요
 - * 퍼블리시티권(초상·성명 등), 방송 콘텐츠 포맷, 글자체 디자인 등

추진 목표

- ▷ 지리적 표시제도, 비전형적 식별표지 및 새로운 저작권 분야에 대한 보호 방안 연구 및 이용 활성화

□ 주요 추진과제

- 해외에서의 우리 지리적 표시 침해 방지를 위해 지리적 표시 목록 교환, 오남용 사례 조사, 네트워크 강화 등 국제적 협력 추진
- 지리적 표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내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 * 동일 지역내 불법적 생산·판매 예방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개정,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기관의 직권조사제 도입, 지리적표시제와 상표제도의 조화방안 모색 등
- 비전형적 식별표지 보호를 위한 국내외 사례·동향 조사, 보호 범위 및 방법 연구와 제도개선 추진
-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및 보호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추진
- 방송콘텐츠 포맷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동향 분석 등을 통한 보호 필요성 및 보호 방안(보호 인정 범위, 심사 방법 등) 검토

V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

1

추진 방향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지식재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심의·확정 후, 이를 토대로 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은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지식재산 관련 중·장기 발전목표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전략·추진방향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년간의 관계부처 계획·시책을 종합하여 수립(9월)
 -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연도별 구체적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수립(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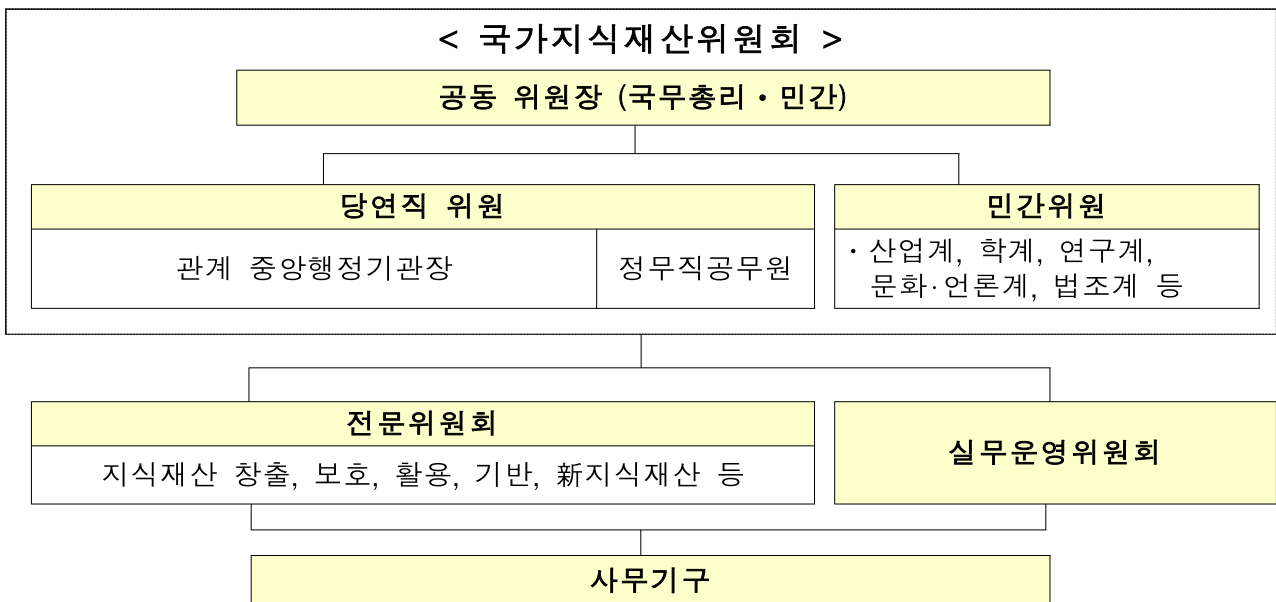
-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정합성 유지
 -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시 관련 계획과의 연계 및 관계 명확화
 - * (예시) 과학기술기본계획,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녹색성장 국가전략,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등
 - 지식재산 관련 주요 정책·계획 수립시 지식재산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지식재산 관련 추진전략의 해외 사례분석 및 적용방안 검토
 - 주요국 지식재산 전략*의 추진상황 검토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한 차별화 및 비교우위 전략 수립
 - * (미) 지식재산집행 공동전략, (일) 지적재산추진계획, (중) 국가지적재산권전략강요
 - 주요국 우수과제 및 장애요인 분석을 통한 기본계획 실효성 제고

2

추진 체계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추진체계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전문위원회」 및 「실무운영위원회」로 구성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주요 사안의 논의 및 결정
 - 「실무운영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관련 실무적 사항 결정, 기본계획의 사전 검토 및 부처간 이견 협의 추진
 -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정책제언, 기본계획의 분야별 심도있는 검토 및 대안 제시



3

추진 일정

- 「지식재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관계부처에 통보(7월) → 기본계획(안) 마련(8월) → 기본계획 종합 후 전문위·실무운영위 검토(8월)
-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개토론회·공청회 개최 후 위원회 의결(9월) → 관보 및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9월)